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8. 9

제 출 자 : 파주시장

☐ 제안이유

- 현재의 정원조례상에는 정원관리기관별(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동등)로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별 1명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
-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정원조정에 대한 탄력성을 유지하고 의회의 심의기능도 보장하기 위해 금번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-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관리기관으로 시본청, 의회사무국,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, 읍면동등 6개 단위로 관리해 오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등 2개 단위로 통합하여 규정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|
| 1. 집행기관의 정원 | : 820명 |
|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| : 18명 |
| 총 계 | : 838명 |
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 본청, 의회사무국,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, 읍·면·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[1996. 3. 1]

조례 제37호

개정 1996. 7. 1 조례 제14호
1996. 12.20 조례 제158호
1997. 1. 15 조례 제163호
1997. 5. 15 조례 제176호
1998. 9. 22 조례 제 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
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
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파주시의 본청·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
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시 본 청 : 405명
2. 의회사무국 : 18명
3. 직 속 기 관 : 98명
4. 사 업 소 : 22명
5. 출 장 소 : 9명
6. 읍·면·동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.) : 286명

제3조(직급별 정원의 규정) 시본청·소속기관 및 읍·면·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
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96. 7. 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96. 12. 2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98. 9. 2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